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1조 조정세율을 일치시켜 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도 포함되므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기획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담배소비세 납세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담배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 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u>서 신설</u> >	제61조(조정세율) ----- ----- ----- 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 <u>틴을 포함한다)</u> 를 원료의 전부 <u>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u> <u>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u> <u>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u> <u>곱한 세율을 적용한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2